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9. 4. 10(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종진]

<의안번호 제2009 - 11호>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년 3월 31일
- 나. 제출자 : 이창도 의원 외 1
- 다. 회부일자 : 2009년 3월 31일

II. 제안이유

- 군내 거주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을철 발열성 전염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III.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보상금의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안 3조)
 - 군내 주소를 둔 농업인 및 농업활동 종사자
-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가을철 발열성 질환자의 의료기관의 치료비 등
 -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금은 관련 법규에 정함
- 보상금의 청구·지급 및 지원제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
 - 보상금 청구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함

IV. 검토의견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먼저 관련상위법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부는 농림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조례제정으로 판단 되고,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가을철 발열성전염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주요조문별 제정내용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조항임.

- 안 제3조에서 지원요건을 정하면서 군내 주소를 둔 농업인과 비농업인 모두 농업의 생산 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한 조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는 보상금의 청구·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6조는 보상금지급제외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이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VI.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농지법,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나. 예산조치 : 추경에 예산 확보

다. 그 밖에

-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규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조의6 (전염병 진단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진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전염병환자등의 범위는 별표 1의 3과 같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1의 4와 같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농업재해 및 농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경영의 규모화,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 이양 및 농업생산자원의 폐기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농림어업인들의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림작업 또는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